

# 청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11. 21. 규칙 제1501호  
1차 개정 2025. 8. 26. 규칙 제16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5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수, 특임교수, 학술연구교수(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초빙교원”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초빙한 사람을 말한다.
3. “연구교수”라 함은 교내 부속시설, 연구소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초빙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8.26.>
4. “특임교수”라 함은 총장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특별강의, 세미나, 학술·연구 및 관련 활동 지원, 산학협력활동 등) 하기 위해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8.26.>
5. “학술연구교수”라 함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8.26.>

**제3조(자격)**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8.26.>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③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5.8.26.>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석사·박사 학위논문 제외)이 100%이상인 자
3.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

④ 특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특별한 임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5.8.26.>

⑤ 학술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5.8.26.>

**제4조(임용)** ① 겸임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 및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예정 학과, 대학원, 부서의 요청을 받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겸임교원은 겸직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임용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③ 연구교수, 특임교수 및 학술연구교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과, 대학원, 부서에서는 활용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제5조(임용기간)** 겸임교원 등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임용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제6조(임무)** 겸임교원 등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대학원 및 학부의 전공 분야 강의

2. 대학원생 논문 지도 및 학부의 교육 실습 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사업 수행 <개정 2025.8.26.>
4. 기타 대학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제7조(교수시간)** 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초빙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8.26.>

② 학술연구교수가 강의를 할 경우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제8조(보수)** ① 겸임교원의 임금은 「청주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초빙교원의 임금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교수·학술연구교수의 임금 등은 사업비에서 부담하며,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8.26.>

③ 특임교수의 임금은 대학회계 재원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의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 65세에 달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10조(면직)** 겸임교원 등의 면직에 관하여는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강사 관련 규정 준용)** 겸임교원 등의 임용일, 임용심사위원회, 채용원칙 및 절차, 소속, 근무조건 및 복무, 재임용, 당연퇴직 및 면직에 관하여는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

원 등”으로 본다. <개정 2025.8.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교수에게는 임용심사위원회, 채용원칙 및 절차, 당연퇴직(한국연구재단에 정하는 바에 따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수, 특임교수에게는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6.>

**부칙(규칙 제1501호, 2019.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청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규정」 및 「청주교육대학교 초빙교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 등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

**부칙(규칙 제1675호, 2025. 8.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주교육대학교 겸임교원 임용 동의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기 관 명<br>(산업체명)   |  | 직 위  |  |
| 기관주소<br>(산업체 주소)  |  | 기관전화 |  |
| <p>상기인은 본 산업체(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귀 대학의 겸임교원 임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의 장(산업체의 장) : (직인)</p> <p><b>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b></p> |  |      |  |



## [학술]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   |                |  |             |
|---|----------------|--|-------------|
| 채용학과(부서)  |                |  |             |
| 채용분야(과제명)   |                |  |             |
| <b>활 용 계 획</b>  |                |  |             |
| 사업<br>개요  | 사업명            |  | 총사업기간       |
|   | 사업기간 내<br>총사업비 |  | 당해연도<br>사업비 |
|   | 사업내용           |  |             |
| 사업 내 담당업무   |                |  |             |
| 임용인원  |                |  |             |
| 임용기간  |                |  |             |
| 근무장소  |                |  |             |
| 임금*   |                |  |             |
| 강의여부  |                | ※학술연구교수에 한함<br>※강의를 할 경우 담당교과목, 시수, 강의 기간 등<br>간단한 강의계획 추가 |             |
| <b>별첨: 사업선정 내역 및 사업계획서* 각 1부</b><br>* 사업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사업의 내용(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

\* 연구교수의 임금 등은 사업비에서 부담하며,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은 연구교수(연구교수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함)를 채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연구교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부서)장

(인)